

NEWS LETTER

2024-12-19

Legal Issue

- 양진영·최주선 변호사, 서울 지방 변호사회 주최 'AI 이용 가이드라인 세미나'에 토론자로 가이드라인 제안
- AI 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와 보상 제도 마련

MINWHO News

- IT기기 물품대금 등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 제기 후 심수억원 지급청구 방어하고, 반소 청구 인용 받아 승소
- 퇴사자가 재직당시 취득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회사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안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 송치 결과 도출



Legal Issue

양진영·최주선 변호사,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주최 'AI 이용 가이드라인 세미나'에 토론자로 가이드 라인 제안

양진영 대표변호사

최주선 파트너변호사

양진영·최주선 변호사는 2024. 12. 4. 서울지방법변호사회가 주최한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AI 이용 가이드라인 세미나'에 전문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 서울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향후 리걸테크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변호사 단체는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조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리걸테크 발전에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있는 점에서 법률정보와 서면의 표준화,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리걸테크 발전을 뒷받침해야 하며 대학 및 빅테크 기업과의 산학협력 추진도 필요해보인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 대응 특별위원회의 위원인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도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만들어져 배포돼야 한다”며 “변호사가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열거라고, 리스크별로 해결방법을 함께 써줘야 한다”고 발언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개진하며 실질적 방향성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8-3424
yangjy@minwho.kr



최주선 파트너 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8-3424
choijs@minwho.kr

Legal Issue

AI 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와 보상 제도 마련

양진영 대표변호사

생성형 AI의 눈부신 발전 뒤에는 뉴스 기사와 같은 양질의 학습 데이터가 있었다. 사실에 기반한 정제된 문장으로 이루어진 뉴스 기사는 AI 학습에 최적의 데이터이다. AI 기업들이 그간 뉴스 기사를 학습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다. 저작권침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AI 기업들은 언론사의 동의 없이 뉴스 기사를 대량으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언론사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대비해야 할지 짚어본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뉴스는 제외해야

뉴스기사는 법적 권리의 대상이며, 뉴스기사를 제작하기 위해 인적, 물적 투자를 한 언론사에 그 권리가 있다. 뉴스기사는 저작권법 상 어문저작물이다. 뉴스기사의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334판결).

저작권법에서는 단순한 사실만 전달하는 시사보도 뉴스의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저작권법 제7조 1,2,3,4호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성격을 가진 것에 비하여, 5호의 경우에는 주체가 국가가 아닌 언론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작성 주체의 측면에서 1,2,3,4와 함께 5번이 포함된 것은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 측면이 있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뉴스기사 중 단순한 단어로만 이루어진 채 사실만 전달하는 시사보도는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의 기사가 기자의 사상을 자기만의 문장과 문체로 풀어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를 삭제하고, 제4조 제1항 1호 어문저작물의 예시(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로 뉴스 기사를 추가로 포함시킨다면, 뉴스기사가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규정이 없는 현행 저작권법 상,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의 공정이용 규정은 뉴스기사에 대한 동의 없는 학습데이터 활용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 따라서 뉴스 기사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TDM 면책규정을 저작권법에 도입하자는 내용의 저작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저작권자들의 반대 및 보상체계 마련의 미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TDM 면책규정이 도입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언론사가 될 수 밖에 없다. TDM 면책규정이 도입될 것을 대비해, 뉴스기사의 학습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체계마련 등이 선행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AI기업과 협상 방식·주체·내용 등 논의 필요

이를 위해 최근 해외 언론사와 AI기업이 체결하고 있는 협약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지난 4월 29일 오픈AI(OpenAI)와 합의하여, AI 모델 개발을 위해 파이낸셜 타임스의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하고 챗GPT 답변에 파이낸셜 타임스 출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답변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입장에서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윈윈전략으로 보인다.

향후 협상에 대비하여, 언론사의 뉴스 기사를 학습데이터로 제공할 경우, 금전적인 대가 이외에도 경영적, 기술적인 지원, 기타 반대급부 등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제적인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나아가 언론사와 AI 기업 협상 시 개별적으로 협상할지, 아니면 단체로서 협상할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단체협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AI기업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론사 간의 입장이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 효과적일지는 알 수 없다. 단체협상이 유리하다고 예상된다면, 협상주체를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신문협회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같은 뉴스 저작물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협상할지, 아니면 별개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지 논의해야 한다.

더불어 언론사와 AI 기업과 협상 시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선 정당한 보상의 제공, 보상의 내용결정, 출처표시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지적재산권 존중,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학습데이터 제공 및 학습내역 기록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때 AI 기업에 넘긴 학습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다. 언론사와 AI기업 간 협상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연구도 필요하다. 뉴스 기사를 학습데이터로 무단 복제, 전송할 수 없는 기술, 뉴스기사가 학습데이터로 활용되었는지 판별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등을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학습데이터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 크롤링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한 문구를 표준화하고, 크롤링 금지 문구를 홈페이지 하단, 이용약관 등 가능한 곳에 전부 명시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산정주체는 누가 적절할지, 적정한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등 뉴스기사의 경제적 가치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언론사 권리 부당하게 침해한 기존 약관도 재검토해야

그 외에도, 현재의 시점에서 언론사의 뉴스기사가 학습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2023년 네이버는 2020년 도입된 뉴스콘텐츠 제휴약관 기준 제8조 제3항이 문제되자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네이버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경우' 사전에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최초 제8조 제3항이 도입되었던 2020년은 생성AI의 출현을 예상할 수 없었던 때로, 결국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약관 조항의 개정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이처럼 언론사와 AI 기업 간 기존에 체결하였던 계약, 약관 등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언론사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계약상 기습조항, 의외조항, 공백이 있다면 권리를 보장받고 침해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언론사, AI기업, 기자 간의 생태계 변화가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I기업, 언론사, 기자가 전부 상생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AI 시대의 도래는 언론계에 새로운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뉴스기사의 가치를 보호하고, AI 기술 발전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언론사, AI 기업, 그리고 기자 개개인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언론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미리 대처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언론사의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AI와 함께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8-3424
yangjy@minwho.kr

MINWHO NEWS

IT기기 물품대금 등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 제기 후 수십억원 대 지급청구 방어하고, 반소 청구 인용 받아 승소

IT기기 물품대금 등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 제기 후 수십억원 대 지급청구
방어하고, 반소 청구 인용 받아 승소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의뢰인) 주식회사 B는 전자제품 관련 물품공급계약과 선금금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아 무선 이어폰을 개발하고 공급하였
으나, 이후 양측은 이어폰 납품 및 대금 정산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고, 이에 A가
의뢰인이 약정된 발주량에 못 미치는 주문을 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십수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과 대응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는 선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대금의
선지급 또는 동시이행을 요구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다
수의 제품을 포함하여 납품하는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부득이 공급계약 및 추가공급계
약을 해지하였다는 점, 이에 따라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승소 결론

당 법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본소에 대하여는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십수억원
의 지급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MINWHO News

퇴사자가 재직당시 취득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회사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안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 송치 결과 도출

퇴사자가 재직당시 취득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회사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안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 송치 결과 도출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가 재직당시 획득한 회사 내부 자료(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퇴사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해당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 당시 취득한 번역가 및 통역가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며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소인 회사를 대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소인의 해당 혐의에 대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 타워 역삼 1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